

1. 제안이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시설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뉴딜 방향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확대하며,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안 제95조)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시 편익시설로 반영, 도시계획변경 절차없이 설치 허용

나.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안 제84조, 제98조,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1조, 제153조)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

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안 제9조)

폭 10m 이상 도로도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라. 인용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6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2.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라목 중 “10”을 “20”로 한다.

제8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라목의 시설

제9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10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10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15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16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도로의 구분) 가. ~다. (생략)	제9조(도로의 구분)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 폭 20미터 - ----- ----- ----- -----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생략)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생 략) <u><신 설></u> 6. (생 략) 7. (생 략)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라목의 시설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7. (생 략)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	<u>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u>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
--	--	---	---

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공 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 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현 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 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 호바목의 시설(「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정한다)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물환경보전법」
--	---